

생산적 금융을 위한 보험업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

2026. 4.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2
[참고1] K-ICS 제도 개요	4
III. 기본 방향	5
IV. 보험업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	6
1. 주식위험액 측정 합리화	6
2. 신용위험액 측정 합리화	8
[참고2] 매칭조정 관련 가상사례	9
3. 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 합리화	10
4. 부동산 관련 위험액 측정 합리화	12
5. 보험사 투자여력 측정 정교화	13
V. 기대 효과	14
VI. 향후 계획	15

I. 추진배경

- 보험산업은 경제 전반에 내재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이자,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주요 기관 투자자
 - 장기 보험부채에 대응하여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
- 이러한 관점에서 건전성 규제는 보험사가 적정 자본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유인체계
 - 보험사는 ①지급여력비율, ②자산-부채 만기(ALM) 등을 관리하면서, 수익성·손익변동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산 배분
 - * ①요구자본(예상치 못한 위기 시 필요자본) 대비 가용자본(사용가능자본) \geq 100%
 - ②Asset-Liability Management: 자산-부채 만기를 관리하여 자본의 금리변동성 완화
- '23년 新회계제도(IFRS17) 도입에 따른 건전성 규제 개편(K-ICS) 이후, 정부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및 리스크 관리 강화에 주력
 - 계리가정 개선¹⁾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제시하고, 기본자본 규제²⁾ 등을 통해 자본건전성 강화 유도
 - * 1) 무저해지상품 및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 신규담보 손해율 가정 기준 제시
 - 2) 기본자본 비율에 대한 규제수준(50%)을 마련하고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포함
- 다만, 자산 운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수적 규정 등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위험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지적
 - 국제규범(예: EU의 Solvency II, IAIS*의 ICS) 대비 보수적 규정, 위험경감 제도 미비 등으로 경제적 실질 반영에 한계
 - * 국제보험감독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이에 따라 보험산업이 생산적 분야에 장기투자자로서 긴 호흡의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 수행에 미흡하다는 평가

➡ 보험업권의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新제도에 부합하는 생산적 금융-건전성 강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

II. 현황 및 문제점

1 보험업권 자산운용 현황

※ 25.12월말 기준

- 보험업권의 전체 운용자산은 1,292조원(생보 934.3, 손보 358.0)
- 장기 보험부채에 대응하여, 안정성이 높은 장기자산에 주로 투자(자산-부채관리, ALM*)하는 것이 특징
 - * Asset-Liability Management: 자산-부채 듀레이션을 매칭하여 자본변동성 완화
 - 국내채권(전체 대비 42.6%)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국공채·특수채(33.5%)가 대부분
 - 외화유가증권*(13.5%)의 경우에도 외화채권(10.2%) 비중이 가장 높음
 - * 외환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대부분 환헤지 중(환헤지비율 94.9%)
- 그 외, 대출채권(15.0%), 수익증권(12.9%) 등 투자 중
 - 부동산 관련 자산(주담대 4.0%, 부동산PF 2.8%)도 보유

< 보험업권 자산운용 현황 >

(조원, %)	생보		손보		합계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현금 및 예치금	22.8	2.4	13.1	3.7	35.9	2.8
주식	104.2	11.2	18.1	5.1	122.3	9.5
채권	418.0	44.7	132.2	36.9	550.1	42.6
(국공채·특수채)	335.1	35.9	97.4	27.2	432.5	33.5
(기타)	82.9	8.9	34.8	9.7	117.6	9.1
수익증권	111.7	12.0	55.2	15.4	166.8	12.9
외화유가증권	131.4	14.1	43.2	12.1	174.6	13.5
(채권)	95.6	10.2	36.1	10.1	131.7	10.2
(기타)	35.8	3.8	7.1	2.0	42.9	3.3
기타유가증권	28.4	3.0	4.6	1.3	33.0	2.6
대출채권	107.8	11.5	86.1	24.1	193.9	15.0
가계	41.8	4.5	21.5	6.0	63.2	4.9
(주담대*)	32.9	3.5	18.8	5.3	51.7	4.0
(기타)	8.8	0.9	2.6	0.7	11.5	0.9
기업	65.9	7.1	64.7	18.1	130.6	10.1
(부동산PF)	13.6	1.5	22.9	6.4	36.5	2.8
부동산	10.1	1.1	5.5	1.5	15.6	1.2
계	934.3	100.0	358.0	100.0	1,292.3	100.0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770.5조원(총자산 대비 16.5%)

2 현행 건전성 규제의 문제점

- K-ICS 제도는 舊제도(RBC) 대비 ICS, Sol II 등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이 높고,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위험을 측정한다는 장점
- 다만, 일부 측면에서는 합리적으로 위험을 측정하지 못하여 경제적 실질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① ICS, Sol II 등 국제규범 대비 보수적·경직적인 규정이 잔존

- 특히 EU는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위험계수 하향 등 생산적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중('27.1월 시행)

* ①법령 등에 근거하여 ②정부 등의 보조금·보증이 제공되고, ③정부 등의 감독이 이루어지며, ④투자 대상 등 제한이 있는 프로그램에 투자 시,
→ 해당 투자의 경우 **실제 위험경감 효과만큼 위험계수 하향**

② 위험경감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요건 해석이 불분명*하여 효과가 제한

* 예) 위험계수가 경감되는 '적격 인프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투자 대상, ②위기 상황분석 수행, ③수익예측가능성 확보 요건 충족 필요(시행세칙 별표22 IV.1-7.)
→ 다만, 투자대상 포함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투자시 未활용**

③ 법령 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세부기준 미비* 등으로 실제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도 존재

* 예) 요구자본 산출 시, 표준모형 외에도 내부모형(보험사 자체통계를 활용)도 금감원장 승인을 받아 활용 가능(감독규정 §7-2)
→ 다만, 규정상 승인요건 미비 등으로 현재 **내부모형 활용사례 無**

- 아울러, 보험업권 ALM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보험사의 장기 운용자산 투자처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

- 특히, 국채 장기물로의 과도한 쏠림에 따른 장기금리 하방 압력으로 건전성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 제기

참고 1 K-ICS 제도 개요

- K-ICS는 보험사에 예상하지 못한 위기 발생 시, 손실(요구자본) 대비 활용 가능 자본(가용자본)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
 - 구체적으로 요구자본은 향후 1년 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액으로서, 시장·신용·보험위험액 등으로 구분

$$\checkmark \text{ 지급여력비율} = \frac{\text{가용자본}}{\text{시장위험액} + \text{신용위험액} + \text{보험위험액 등}} \geq 100\%$$

- 보험사 자산운용(주식, 대출·채권, 펀드 등) 측면에서는 요구자본 중 시장위험액(주식위험액), 신용위험액이 주요 고려 요소

- ① (주식) 비상장(49%), 상장(35%) 등 종류에 따라 위험액 산출
 - 인프라 주식(20%), 장기보유 특례(20%)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동성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험액 경감
- ② (대출·채권) 중앙정부·지자체, 공공부문, 일반기업 등 분류별로 신용등급, 유효만기 등을 고려하여 신용위험계수 부여
 - 정부가 보증하는 공공채에 대해서는 해당 보증분을 무위험으로 분류하는 등 위험경감 일부 인정
- ③ (펀드) 원칙적으로 실제 매입한 자산에 대한 위험액을 산출하는 편입자산분해(look-through) 방식 활용
 - 편입자산분해가 어려운 경우, 보수적 관점에서 자산을 전액 비상장주식(49%)으로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험액 산출
 - 차입이 가능한 레버리지펀드의 경우, 레버리지비율을 고려한 실제 투자금액 기준*으로 위험액 산출

* 다만, 편입자산분해가 불가능한 경우, 보수적 위험액(약관상 최대레버리지비율) 사용

III. 기본 방향

- ◆ K-ICS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글로벌 규범을 참고하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추진
 - 실질적인 위험 수준에 비례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위험계수 합리화
 - 보험회사의 투자여력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K-ICS비율 산출체계 정비도 병행 추진
- ⇒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에 급격한 부담 증가 없이 생산적 분야로의 장기자금 공급 유도

< 추진과제 요약 >

위험계수 합리화	1. (주식·지분투자) 주식위험액 측정 합리화
	① 정책프로그램 장기투자 시 위험계수 경감
	② 적격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경감
	③ 위험경감이 적용되는 '적격 인프라' 범위 확대
	2. (대출·채권) 신용위험액 측정 합리화
	① 매칭조정(Matching Adjustment) 제도 활성화
	② 정부 등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에 대해 신용위험계수 경감
	3. (펀드) 주식·신용위험액 측정 합리화
	① 레버리지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 개선
	② 블라인드펀드 미집행 약정 관련 위험액 측정 합리화
	4. (부동산) 신용위험액 측정 합리화
	①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합리화
K-ICS비율 산출체계 정비	5. (전체) 보험사 투자여력 측정 정교화
	① 보험사 내부모형 도입 지원
	②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기준 개선

IV. 보험업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

1 주식위험액(주식·지분투자) 측정 합리화

① 정책프로그램 장기투자 시 위험계수 경감 (49 → 20% 이하)

- (현행) 정책프로그램 투자 시 재정 후순위 보장 등에 따라 투자위험이 감소하나 위험계수에는 未반영(비상장주식 49%)
 - EU의 Sol II와 마찬가지로 주식에 대한 '장기보유 특례*(20%)'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 * 10년 이상 보유계획 등 요건 충족 시 변동성 완화효과를 감안, 위험계수 경감
 - Sol II와 달리 특례 적용대상을 직접보유 상장주식으로 제한하여 비상장주식·펀드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
- (해외사례) EU는 Sol II 개정안(27.1월 시행)을 통해 실제 위험경감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프로그램 특례*' 도입 추진 중
 - * 예) 재정 20% 후순위 보장 시 위험계수도 20% 경감
 - 해당 특례는 '장기보유 특례'와 중복적용도 허용

⇒ (개선①) 정책프로그램* 투자 시 실제 위험경감효과에 비례하여 위험계수 경감(예: 재정 20% 우선손실충당 시 위험계수 20% 경감)

* [요건] ①법령 또는 정책으로 발표된 사업, ②정부·정책금융기관 보조, ③정부·공공기관의 감독, ④투자대상 등 제한 (※은행권 요건과 매칭)

⇒ (개선②) '장기보유 특례' 적용 대상에 비상장주식·펀드를 포함하고, 정책프로그램 특례와의 중복적용 허용*

* 예) ①정책펀드(후순위 20%)를 통해 첨단산업 비상장기업에 ②장기 투자 시, [기존] 비상장주식 49% → [개선] 특례 중복적용 16% [=20×(1-0.2)]

② 적격 벤처투자자에 대한 위험계수 경감 [49 → 35%]

- (현행) 근거법에 따른 벤처기업 요건 충족 등 위험 감소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비상장주식 위험계수 적용(49%)
- (해외사례) Sol II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벤처투자자의 경우 비상장주식에도 상장주식의 위험계수 적용

* EU회원국 내 설립되어 벤처기업에 70% 이상 투자하는 벤처펀드

⇒ (개선) 적격 벤처투자자¹⁾에 대해 상장주식 위험계수(35%) 적용²⁾

- * 1)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주식,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전법), 벤처투자조합(벤처투자촉진법) 등 벤처펀드
- 2) 벤처펀드의 경우 편입자산분해 없이 펀드투자액 전체에 35% 적용

③ 위험경감이 적용되는 「적격 인프라」 범위 확대 [49 → 20%]

- (현행)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프라(적격 인프라)의 지분투자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위험계수(20%) 적용 중
 - * 도로, 항만, 학교, 상하수도, 발전, 폐기물처리 등 공공시설 및 공공 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시설 (시행세칙 별표22)
- 다만, 해당 요건이 불명확하여 신재생에너지, AI 기반시설 등 非전통적 인프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해외사례) ICS는 적격 인프라 대상의 예시를 폭넓게 제시*
 - * 예) 에너지 발전·송전·저장시설, 디지털·통신 관련 데이터센터, 통신탑

⇒ (개선) ICS 사례를 참고하여 신재생에너지, AI 기반시설 등 非전통적 인프라에 대해서도 「적격 인프라」로 인정

※ 「적격 인프라」 범위 확대 시,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액도 경감되는 효과

2 신용위험액(대출, 채권) 측정 합리화

1 매칭조정(Matching Adjustment) 제도 활성화

- (현행) 보험부채와 동일한 현금흐름을 보이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매칭조정 제도의 근거는 旣마련

※ 現 매칭조정 제도 개요

- ▶ (개요) 특정 자산과 특정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이 동일한 경우, 해당 부채에 대해서는 국채가 아닌 해당 자산의 수익률을 할인율로 활용
- ▶ (요건) 특정 자산이 ①매칭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기간 동안(→장기자산), ②고정된 현금흐름 창출 → 금감원장 승인을 받아 적용
- ▶ (효과) 해당 보험부채 할인율 ↑ → 보험부채 평가액 ↓ → K-ICS비율 ↑
[→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높은 자산과 매칭 필요]

-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①고정되면서 ②100% 매칭(미스매칭률 0%)될 것을 요구

→ 동 요건을 충족하면서 국채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는 장기 자산을 찾기 어려워 매칭조정 제도가 사용되는 사례 無

* 장기 국채의 경우 장기간 고정된 현금흐름 창출을 통해 매칭조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보험부채 할인율 상승 효과가 없어 제도 활용 실익이 없음

- (해외사례) 해외사례(예: ICS, Sol UK)의 경우, 매칭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동 제도 적극 활용 중

- 자산의 현금흐름이 고정되지 않더라도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미스매칭률이 일정 수준 이하(예: ICS 기준 10%)인 경우 허용

⇒ (개선) 매칭조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 변동금리 자산에 대해서도 매칭조정 적용을 허용하고, 미스매칭률 요건 완화(예: 10%)

* 예) 인프라펀드 투자(수익률=국고채 5년물 금리 + 100bp, 5년마다 조정) 가정 시
[기존] 수익률이 5년 후에 변동될 수 있어 매칭조정 적용 불가
[개선] '인프라펀드 투자'와 '연금보험'을 매칭하여 보험부채 감소 효과

참고 2 매칭조정 제도개선 관련 가상 사례

1. 매칭조정 제도 개요

- 특정 자산과 특정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 해당 부채는 국채가 아닌 해당 자산의 수익률을 할인율로 활용
 - 해당 보험부채의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부채평가액이 감소하고 K-ICS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

2. 매칭조정 활용 가상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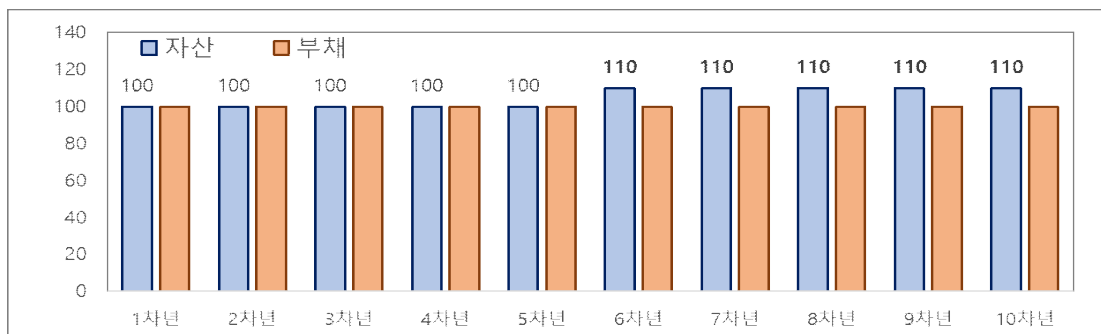
[가정]

- 확정연금(10년, 연 100씩 지급) 부채에 대해 변동금리형 인프라대출(총 10년, 국채5년물금리+100bp, 5년 후 금리변동) 자산을 매칭
 - 부채로 인한 현금지출은 고정(연 100)되나, 자산으로 인한 현금유입은 6차년부터 변경(예:연 100→110)될 가능성

[제도개선 효과]

- (현행) 변동금리형 인프라대출은 현금흐름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칭조정 적용 불가 → 국채금리*로 할인
 - *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유동성 프리미엄은 未반영
- (개선) 국채금리+스프레드 형태의 현금흐름에 대해서도 매칭조정 적용 허용 → 해당 보험부채를 국채금리+100bp로 할인

< 현금흐름 예시(자산현금흐름이 6차년부터 100→110으로 증가) >



2 정부 등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에 대해 위험계수 경감

□ (현행) '공공채'의 경우, 정부 보증 시 해당 보증분에 대해서는 무위험(0%)으로 분류

○ '인프라 대출'의 경우, 정부 등이 전액보증하는 경우에만 무위험으로 분류하며, 일부보증 시에는 위험경감 불가

※ [비교] 글로벌 보험사 대상의 ICS는 구체적인 위험계수 조정방식을 열거하기 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보험사가 위험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 부여

⇒ (개선) 정부 등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의 경우 (공공채와 마찬가지로) 해당 보증분은 무위험(0%)으로 분류

3 펀드 관련 주식·신용위험액 측정 합리화

1 레버리지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 개선

□ (현행) 차입을 통한 투자가 가능한 레버리지펀드의 경우 위험 증가 효과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위험액 산출

① 약관 상 최대 레버리지비율이 있는 경우 최대 레버리지비율 만큼 차입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험액 산출

② 최대 레버리지비율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SPC 등)에는 보수적 위험액(100%) 사용

※ 상장주식(35%) 레버리지펀드(최대 레버리지비율 200%)에 100억원 투자 시

① 최대 레버리지비율 반영시 위험액 → $100\text{억원} \times 200\% \times 35\% = 70\text{억원}$

② 최대레버리지 비율이 없는 경우 위험액 → $100\text{억원} \times 100\% = 100\text{억원}$

→ 유동성 목적의 단기 차입만 가능한 경우에도 과도하게 높은 위험액이 산출되는 등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 (개선) 레버리지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방식 개선

- ① 약관 상 ❶차입목적이 유동성 관리 목적이며 ❷차입기간이 1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레버리지펀드에서 제외
- ② 약관 상 투자기간 종료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점의 실제 레버리지 비율 적용
- ③ 약관 상 최대 레버리지비율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SPC)*에도, 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레버리지비율이 확인되면 동 비율 적용

* 현재에는 투자금 전액이 위험액으로 산출(→위험계수 100%)

② 블라인드펀드 미집행 약정 관련 위험액 측정 합리화

□ (현행) 출자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블라인드펀드의 경우, 잔여 약정금액을 잔여투자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대해 위험액 측정

* 잔여약정금액을 잔여투자기간동안 매년 균등하게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

- 잔여투자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잔여약정금액 전액에 대해 위험액을 측정

→ 현실적으로 출자가 가능한 금액(캐피탈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위험액이 산출되고 있다는 지적

□ (해외사례) ICS에서는 바젤 기준 등을 참고하여 미집행 출자 약정에 대해 신용환산율(CCFs*)을 활용하여 위험액에 반영

* Credit Conversion Factors: 미집행 약정이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약정금액 대비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대출금액에 대한 추정비율

⇒ (개선) ICS, 은행권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험업권 실제 통계 분석을 통해 신용환산율을 도출하고 위험액 산출시 반영

* 예) 블라인드펀드의 잔여약정금액이 100억원, 신용환산율이 20%인 경우, 20억원(100억원×20%)에 대해서만 위험액 산출

4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개선

- (현행)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LTV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적용 중(1.6~5.6%)
- (은행권 현황) 주택담보대출 신용리스크 평가 시 내부등급법 (실제 통계기반) 또는 표준등급법(LTV별 차등) 사용중
 - * 일부 인터넷은행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내부등급법 사용중
- 표준등급법 기준 비교* 시 은행-보험 위험계수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이나, 일부 구간(LTV 60~80%)에서는 보험업권이 완화
 - * 은행권 BIS비율 분모는 위험가중자산 vs 보험업권 K-ICS 비율 분모는 요구차분 → 은행권 위험계수(위험가중치)에 자산-자본 환산비율을 곱하여 비교
- ※ [참고] 은행권은 자본적립 부담 강화를 위해 내부등급법 기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20%으로 상향 조정('26.1월)

< 현행 LTV 구분별 주택담보대출(독립형) 위험계수 >

LTV	~40%	~50%	~60%	~70%	~80%	~90%	~100%	100%~
K-ICS	1.6%	2.8%		3.5%		4.0%	4.5%	5.6%
BIS	1.6% (RW 20%)		2.0% (RW 25%)	4.0% (RW 50%)			5.6% (RW 70%)	

- ⇒ (개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보험업권 자본적립 기준을 은행 위험가중치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K-ICS 위험계수 정비
- ※ 추후 은행권 위험가중치 조정 시, 보험업권 위험계수 추가 조정도 적극 검토
- LTV 60% 초과 80% 이하 위험계수를 3.5→4.0%로 상향

< LTV 구분별 주택담보대출(독립형) 위험계수 개선안 >

LTV	~40%	~50%	~60%	~70%	~80%	~90%	~100%	100%~
K-ICS	1.6%	2.8%		3.5% → 4.0%		4.0%	4.5%	5.6%

5 보험사 투자여력 측정 정교화

①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도입

- (현행) 요구자본(위험액) 산출 시 표준모형(업계 평균 활용) 외에 내부모형(보험사 자체통계 활용)의 활용근거는 旣마련
 - 다만, 新제도(IFRS17, K-ICS)의 안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간 표준모형 중심*으로 운영 중
- * 내부모형은 금감원장 승인이 필요하나 아직 승인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활용사례 無

⇒ (개선) 국제적 정합성, 은행권 사례 등을 고려하여 내부모형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사전협의 절차 등을 통해 보험사 지원

②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기준 개선

- (현행) 보험부채 할인율 = 국고채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LP)
 - * 보험부채의 비유동적 특성을 고려하여 LP(Liquidity Premium) 가산
→ 가산되는 만큼 할인율이 증가하여 보험부채가 감소하는 효과
 - 현재 LP는 보험사 대표 포트폴리오의 금리부자산(대출채권 등) 각각의 LP를 가중평균하여 산출
 - 다만, 수익증권은 기초자산과 관계 없이 전액 非금리부자산으로 보아 LP를 0으로 간주
- 그러나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에 금리부자산이 포함되는 만큼, 현행 방식으로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과소평가된다는 지적

⇒ (개선) 보험사가 투자한 수익증권 중 금리부 자산에 대해서는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

* 예) 직접투자 금리부자산(총 자산 40%) LP 100bp, 수익증권(총 자산 20%) LP 50bp
→ 총 LP = 100bp×40% + 50bp×20% = 50bp (50bp×20%만큼 가산)

V. 기대 효과

◆ 글로벌 정합성,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위험계수 경감**을 통해 보험사의 생산적 분야 자금공급 확대 유도

1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 장기투자 : 49 → 20% 이하

- 정책펀드 장기투자 시, 펀드 전체에 대해 장기보유 특례(20%)와 위험경감효과 반영

* 예) 재정 후순위 보강 20%인 정책펀드의 경우, 위험계수 16%(=20%×(1-0.2))

2 신재생에너지, AI 기반시설 등 인프라 지분투자 : 49 → 20%

- 기타 주식(=비상장주식)으로 보수적 위험계수가 적용(49%)되던 非전통적 인프라를 '적격 인프라'로 보아 위험계수 경감(20%)

3 신기술투자조합 등 적격 벤처투자 : 49 → 35%

- 적격 벤처투자의 경우 펀드 전체에 대해 상장주식 수준의 위험계수를 적용(35%)

4 주택담보대출 : 3.5 → 4% (LTV 60~80 구간)

- 은행권 위험계수에 맞추어 보험업권의 주담대 위험계수 조정

5 기타 생산적 금융 유발 효과

- 레버리지 펀드 등 위험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매칭조정 제도, 내부모형 도입 등을 통해 추가적인 투자여력 확보

⇒ 동 제도개선을 통해 확보한 투자여력으로 인프라 대출에 자금공급 시, 총 **24.2조원***의 추가 자금공급 가능

* 위험계수 조정 등을 통해 감소한 위험액만큼 인프라 대출에 공급한 경우를 가정

VI. 향후 계획

- 대부분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인 만큼, 신속하게 규정개정 절차 추진(계량영향평가 등 거쳐 감독규정 개정, '26.2Q)
 -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한 과제(매칭조정제도 개선, 미집행약정 개선 등)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발표**('26.3Q)
- 이후에도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권·전문가 TF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마련(수시)

< 과제별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

과제	조치사항	추진계획
1. (주식) 시장위험액 측정 합리화		
① 정책프로그램 장기투자 시 위험계수 경감	규정 개정	'26.2Q
② 적격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경감	규정 개정	'26.2Q
③ 위험경감이 적용되는 '적격 인프라' 범위 확대	규정 개정	'26.2Q
2. (대출·채권) 신용위험액 측정 합리화		
① 매칭조정(Matching Adjustment)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26.3Q
②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 신용위험계수 경감	규정 개정	'26.2Q
3. (펀드) 시장·신용위험액 측정 합리화		
① 레버리지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 개선	규정 개정	'26.2Q
② 블라인드펀드 미집행 약정 관련 개선	방안 마련	'26.3Q
4. (부동산) 시장·신용위험액 측정 합리화		
①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합리화	규정 개정	'26.2Q
5. (전체) 보험사 투자여력 측정 정교화		
① 보험사 내부모형 도입	규정 개정	'26.2Q
②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기준 개선	방안 마련	'26.3Q